

##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39
----------	-----------

제출연월일	2008. 10. 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1010비전 실천 및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기업사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1)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안 제4조)
- 2)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안 제5조)
- 3)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시상(안 제6조, 제7조)
- 4) 군정 홍보매체 활용 기업홍보(안 제8조)
- 5) 중요한 협약체결 시 군수실 등 편의제공(안 제9조)
- 6) 기업애로상담관 지정·운영(안 제10조)

다.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1) 유치기업이 공유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안 제11조)
- 2) 산업시설용지 지원(안 제12조)
  -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 또는 장기대부
  - 개별공시지가로 재산평정,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10
- 3) 대부료 면제(안 제13조)
  - 원자재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면제
- 4) 대부료 이자지원(안 제14조)
  -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 임대산업 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5년간 대부료의 이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5) 산업시설용지, 대부료 면제, 대부료 이자보전의 지원기준 규정(안 제15조)
- 6)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제품 발굴·홍보, 시장개척 등 판로지원(안 제16조)

- 7) 공산품전시관 설치·운영(안 제17조)
- 8) 해외품질규격인정 컨설팅비용 일부지원(안 제18조)
- 9)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일부지원(안 제19조)
- 10) 군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안 제20조)
- 11) 신규산업단지 연접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안 제21조)

**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1) 노동단체의 체육, 문화활동비용 일부지원(안 제22조)
- 2)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안 제23조)
- 3) 근로자 주거지원(안 제24조)
  - 군내 이주 근로자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 알선
  - 10가구 이상 사원주택 집단건립 시 부지 알선, 진입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지원, 부지매입비 100분의30 지원

**마. 각종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둠(안 제25조)**

**바. 보조금 집행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안 제2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32조, 제39조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33,64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8. 9. 3. ~ 9. 2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이노비즈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기업사랑운동의 범군민적 확산과 기업인이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기업사랑 환경조성

제4조(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유관 기관·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5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투자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투자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기업홍보) 군수는 군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군수실 등 편의제공) 군수는 관내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군수실 및 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 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 제3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부료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산 평정가격은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제13조(대부료의 면제)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이란, 원자재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이 경우 군과 대부계약한 토지의 대부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료 이차지원)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5년간 대부료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료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이노비즈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실·과·단·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 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산품전시관 운영)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유지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도록 한다.

1. 신규유치기업
2. 신제품 생산기업
3. 유망 중소기업
4. 그 밖의 관내 기업

제18조(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신청 및 정산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부스(조립, 부스 2개)를 기준으로 하며, 부스임차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내로 한다.
2.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 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20조(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군수는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고취와 개발된 기술의 자산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연접마을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조성 산업단지와 연접한 마을의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제22조(노동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문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거창군근로자 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자격 및 인원,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만, 고등학생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2.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3. 학교, 단체, 기업 또는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한다.

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장학생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영세하여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기업체
2. 근로자의 보수 및 재산정도

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및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거창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시회 (박람회) 참가개요	전시회명						
	참가품목						
	참가부스	부스		총면적	m <sup>2</sup>		
	부스임차료	원		총참가비	천원		
활동성과	상담건수	건		상담금액	백만원		
	계약건수	건		계약금액	백만원		
	방문자수	명		바이어수	명		
차회 동종 전시회 참가여부	참가			미참가			
전시회참가 자체평가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및 시장 반응							
주요성과 계약내용							
사업비 집행결과	계	군보조		자부담	그밖에		비고
	원	원		원	원		
당사는 위와 같이 전시(박람회)회 참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업체명 :				대표 :			
거창군수 귀하				(인)			
※ 구비서류 1. 전시(박람회)회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각 1부 2. 전시(박람회)회 참가 증빙사진 2매							



[별지 제5호서식]

## 장학생추천서

### □ 회사 및 근로자 기본사항

회 사		근 로 자	
회 사 명		소속부서	
주 소		성 명	
업 종 명		주 소	
근로자수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 □ 확 인 내 용

근로자 근무기간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거창군수 이상의 표창여부	비 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위 학생을 200 년도 거창군근로자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자 :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 (인)

붙임 :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1부

거창군수 귀하